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경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35
----------	-------

발의년월일 : 2019. 3. .

발 의 자 : 이경애 의원 등 2/명

1. 제정이유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라 안산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시행과 조성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을 정함(안 제6조 ~ 제13조)
-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제21조)
-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 제2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발체서 등 : 붙임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6.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예고기간 : 2019. 3. 8. ~ 3. 13. (5일간)

7. 기타참고사항 :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붙임 1】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권리”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조성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관련기관·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을 비롯한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은 자립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 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 되도록 해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해당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5. 놀이시설의 확충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아동 환경 안전망 구축
- ②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구축

제8조(아동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권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4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범위 및 방안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아동부서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 보호자 대표
2. 시 소재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3. 시 소재 교육지원청의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4. 아동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5. 안산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회의록 작성과 보존을 위하여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의결 사항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건강 등의 사유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아동친화도시추진 아동참여위원회

제22조(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3조(아동위원회 기능)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토론 등 참여활동
2. 아동의 권리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된 행사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아동위원회 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및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은 시장이 권역별·성별·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 중에서 공개 모집 선발을 기본으로 하되,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아동위원장 호선시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한다.

⑤ 아동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고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및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아동위원의 지원을 위하여 해당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아동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

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⑥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8조(아동위원의 해촉) ① 아동위원이 만 19세가 되면 자동 해촉(解囑)되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안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아동위원회 지원 등) ①시장은 아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 및 단체복 등 지급
2. 견학활동 및 워크숍 기회제공
3. 우수 아동위원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안산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0조(다른 계획 등에 반영) 시장은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원	이경애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69)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135
----------	-------

제안년월일 : 2019. 4. 2.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수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 소속위원회 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함

주요골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함.(안 제2조제2호, 제12조 제2항)
-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안산시의원의 위원회소속 의원을 포함.
(안 제16조제3항제5호)
- 아동위원회의 연령의 범위를 정함.(안 제28조제1항)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12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권리” 를 각각 “아동의 권리” 로 하고,

안 제16조제3항제5호 중 “의원” 을 “의원(소속위원회 포함)” 로 하며,

안 제28조제1항 중 “만19세” 를 “19세” 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아동권리</u>”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p> <p>제12조(<u>아동 권리</u> 홍보 및 교육)</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u>아동 권리</u>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 4. (생략)</p> <p>5. <u>안산시의회 의원</u></p> <p>6. (생략)</p> <p>② ~ ⑤(생략)</p> <p>제28조(<u>아동위원의 해촉</u>) ① 아동위원이 <u>만19세</u>가 되면 자동 해촉(解囑)되는 것으로 본다.</p>	<p>제2조(정의) -----</p> <p>-----</p> <p>1. (원안과 같음)</p> <p>2. “<u>아동의 권리</u>” -----</p> <p>-----.</p> <p>제12조(<u>아동의 권리</u> -----)</p> <p>① (원안과 같음)</p> <p>② ----- <u>아동의 권리</u>-----</p> <p>-----.</p> <p>③ (원안과 같음)</p> <p>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원안과 같음)</p> <p>1. ~ 4. (원안과 같음)</p> <p>5. ----- <u>의원(소속 위원회 포함)</u></p> <p>6. (원안과 같음)</p> <p>② ~ ⑤(원안과 같음)</p> <p>제28조(<u>아동위원의 해촉</u>) ① -----<u>19세</u>-----</p> <p>-----.</p>